

텔레핸들러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6761 (2025.12.23.)
- 쟁 점 사 항: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인도네시아
- 최종 원산지: 인도네시아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건설·농업 현장 등에서 자재를 운반·적재하는 다목적 하역·인양 장비	
재료	 중국, EU, 인도, 한국, 미국 등	• 엔진 • 변속기 • 운전실 서브 어셈블리 • 펌프 시스템 • 전방 및 후방 차축 등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중국 EU 인도 한국 미국  엔진, 변속기 등 구성품 생산 Manufacturing ▾  인도네시아 STEP 1 외국산 구성품 수입 STEP 2 프레임 서브 어셈블리 생산 STEP 3 붐 섹션 생산 STEP 4 최종 조립 Export ▾  인도네시아 최종 수출	
상세 공정	 중국, EU, 인도, 한국, 미국 등	• 엔진, 변속기, 펌프 시스템 등 텔레핸들러 생산을 위한 각종 재료·부품 생산
	 인도네시아	• 1단계: 프레임 서브 어셈블리 생산 - 금속판·튜브 등을 절단, 성형, 가공, 용접하여 텔레핸들러 기본 차체 구조 형성 • 2단계: 붐 섹션 생산 - 강판을 절단, 굽힘, 용접하여 붐 섹션 생산 • 3단계: 최종 조립 - 프레임 서브 어셈블리, 붐 섹션, 엔진, 변속기, 차축, 펌프 등을 최종 결합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금속 시트, 판 및 튜빙 등의 일차적인 금속 재료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 공정을 통해 주요 구조물인 프레임 서브 어셈블리와 붐 섹션으로 변형됨
- ⊙ 이와 더불어 엔진, 변속기 등의 개별 부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텔레핸들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, 인도네시아에서의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각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텔레핸들러라는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

→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

IV 시사점

- ⊙ 다수의 구성품들이 결합하여 완성 장비 전체의 기능을 형성하는 경우,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단일 핵심 구성요소보다 전체 공정의 복잡성, 조립으로 인한 기능 통합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지게차
사례번호	NY N302755 (2019.04.05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미국] - 지게차용 엔진 생산 • [중국] - 운전실, 마스트, 하중 지지대, 포크, 오버헤드 가드, 타이어, 변속기, 차축 등 지게차 구성품 생산 - 최종 결합을 통해 완제품 생산
신청인의 주장	• 지게차의 원산지는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엔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, 이에 따라 엔진이 생산된 미국이 원산지임
판정 결과	• 지게차의 원산지는 그 부분들의 총합(sum of its parts)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엔진이 지게차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나, 다른 여러 구성품들 또한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이며, 이러한 구성품 없이는 지게차가 작동할 수 없음 • 지게차의 원산지는 여러 구성품들이 결합되어 지게차가 완성된 중국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